

심 사 보 고 서

1.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통·리장점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 무 위 원 회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운영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주택 및 아파트건립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통반의 규모가 확대하거나 과소하여 일선행정 추진상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통·반 증설 또는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12개통 209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으로 일선행정추진에 완활을 기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리장 정수를 435명에서 447명으로 12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12개 통이 증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은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제25조 내용 중 제12조의 2 규정을 제12조로 정정하는 내용과 소모품의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가액기준이 현 싯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10만원으로 현실화한 것으로써 진지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로서 다수의 시민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 체육행사과 체육경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사용료는 91. 12. 7 개관시 사용료를 조정없이 현재까지 적용함으로 타 도단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와 시내 유사체육관 사용료와의 요금차이가 현저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로 시민에 홍보가 된 사항이지만 진지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정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